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71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서천호 · 김선교 · 김예지
서명옥 · 최보운 · 성일종
이달희 · 임종득 · 조지연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애계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의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범위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에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과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 형태 시로서 같은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가 아닌 지역의 동 지역을 포함한다)의 학생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u>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u>
	<u>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u>
	<u>전형의 지원자격에 농어촌지역</u>
	<u>(「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u>
	<u>읍·면 지역과 같은 법 제10조</u>
	<u>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 형태</u>
	<u>시로서 같은 법 제198조제2항</u>
	<u>제1호에 따른 특례시가 아닌</u>
	<u>지역의 동 지역을 포함한다)의</u>
	<u>학생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	⑤ -----제4
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항-----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으로 정한다.	-----.